

1.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기한은 언제까지이며, 현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향후 연도별 계획과 일정,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.

□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기한 (참고1)

-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3-1공구*를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('15.6월, 4자합의)
 - * 수도권매립지 매립 가능 부지는 1공구('92년~'00년), 2공구('00년~'18년), 3-1공구(현재 매립 중), 3-2공구(잔여부지), 4공구(잔여부지)로 구분
- 당초 2016년 만료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 기간을 '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시'까지로 연장*
 - * 공유수면 면허권자(환경부·서울시)의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면허관청인 인천광역시가 승인

구분	기존	4자합의 이후
매립면허 기간	1989년 ~ 2016년	1989년 ~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시까지

□ 수도권매립지 관련 계획

- (매립량 감축) 생활·건설·사업 폐기물 매립량 감축계획 수립 예정(연내)
 - * 3-1공구 매립률('20년말 기준) : 34.3%
- (후속 매립지) 대체매립지 등 후속 매립지 조성방안에 대한 수도권 3개 시·도 합의 도출을 위해 중재(실무·기관장 협의 병행, 지속)
 - 합의 도출 후 대체매립지 등 후속 매립지 조성을 위한 일정 및 예산 구체화 예정

2.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과 관련한 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 3개 시·도에 대한 의견 수렴, 업무협약 등의 계획 및 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.

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(‘21.4.15일)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4자간 논의방향 결정 (참고2)

○ 폐기물 반입량 감축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월 1회 4자간 국장급 논의* 실시

* 5.25일(화), 국장급 4자 회의를 개최하여 반입량 감축방안 등 논의

○ 환경부장관은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지사의 양자 또는 다자 회동*을 추진

* 서울시장 면담(4.23일), 인천시장 면담(5.12일), 경기도지사 면담(5.25일)

3.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폐기물 발생량, 순환이용률, 최종 처분율 등에 대한 연도별(2016년~2020년), 지역별(서울·인천·경기) 추진실적 자료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.

연도별·지역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 별첨 (참고3)

4. 언론보도에 의하면,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2028년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.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동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(참고4)

□ 4자합의서

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·효율적 처리를 위한 이행사항

1.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(제3, 4 매립장) 중 3-1공구(103 만 m^2)를 사용하고, 3개 시·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·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. 3개 시·도가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 참여하여 자문·지원·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 단,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%(106 만 m^2)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.
2.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, 건설·사업장폐기물의 매립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 추진하는 등 친환경 매립방식을 도입한다.
 - 환경부와 3개 시·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, 건설·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'15년 말까지 수립한다.
3. 환경부와 3개 시·도는 폐기물 수송도로 환경개선 및 수송차량 밀폐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, 세부 이행계획을 '15년 말까지 수립한다.

환경부와 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는 동 합의서에 합의하고, 이의 구체적인 이행 상황은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가 점검·관리 하도록 한다.

2015. 6. 28.

환경부장관

서울특별시장

인천광역시장

경기도지사



□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

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5 - 253호

공유수면 ‘수도권매립지’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

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공유수면매립지 ‘수도권매립지’ 1공구에 대하여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(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(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)에 따라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9월 30일

인 천 광 역 시 장

1. 실시계획 변경 승인 연월일 : 2015년 9월 30일
2.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성 명 : 환경부장관 윤성규, 서울특별시 박원순
 - 나. 주 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
3. 매립목적 : 수도권매립지 조성

4.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일원 (1,033,000m²)

5.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: 실시계획 승인기간 참조

6.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

가. 변경사유 :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(1단계) 조성공사

나. 변경사항 : 실시계획 승인기간 및 면적 변경

구분		매립 목적	매립 면적	실시계획 승인면적	실시계획 승인기간
당초	1공구	수도권발생 쓰레기매립장 조성	16,183,184m ²	8,053,515m ²	1989. 6. ~ 2016.12.
변경	1공구	수도권발생 쓰레기매립장 조성	16,183,184m ²	9,086,515m ²	1989. 6. ~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사용 종료시까지

※4자협의체 합의사항(2015. 6.28. 환경부장관, 서울특별시장, 인천광역시장, 경기도지사) :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(제3, 4 매립장) 중 3-1공구 (103 만m²)를 사용하고, 3개 시·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·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. 3개 시·도가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에 참여하여 자문·지원·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 단,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%(106 만m²)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.

7.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: 인천광역시 항만공항시설과 사무실 비치

□ 공유수면매립면허증

제2017-1 호

공유수면매립면허증

1. 성명: 환경부장관 조경규, 서울특별시장 박원순, 인천광역시장 유정복
2. 주소: 환 경 부 (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044-201-7405)
서울특별시(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, 02-2133-3676)
인천광역시(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, 032-440-8272)
3. 매립장소: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·백석·오류·검암동 일원
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해안 간척지 일원

4. 매립면적

계	환경부	서울특별시	인천광역시
16,363,184㎡	2,990,115㎡	6,721,798㎡	6,651,271㎡

※ 매립면적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승인 시에 면허구역의 범위에서 실측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5. 매립목적

- 1공구(16,002,037.4㎡): 수도권지역 발생 쓰레기 매립장 조성
- 1-1공구(181,146.6㎡) : 공공시설용지(도로)
- 2공구(180,000㎡) :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

6. 준공기한

- 1공구, 1-1공구: 1989. 6.~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사용 종료 시 까지
- 2공구: 2014.10.27. ~ 2017.12.31.

7. 면허 부관

- 기 부여한 면허조건 및 실시계획승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함.
- 피면허권자는 환경부와 인천광역시(2016. 10. 28.) 및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(2016. 10. 31.)간 체결한 양여계약(협약)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.
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·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(승인)합니다.

2017년 2월 6일

인 천 광 역 시 장

참고2

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논의 결과

			보 도 참 고 자 료	
보도일시		배포 후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담당 부서	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	김정환 과장 / 김세현 사무관 044-201-7400 / 7407		
	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	정미선 과장 / 어용선 팀장 02-2133-3670 / 3672		
	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	서재희 단장 / 김은진 팀장 032-440-5661 / 8271		
	경기도 자원순환과	권혁중 과장 / 이계성 팀장 031-8008-3520 / 4261		
	배포일시	2021. 4. 15. / 총 1매		

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논의 결과

- ① 수도권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3개 시·도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공동 인식
- ② 공모 요건을 완화하여 재공모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조속한 논의를 거쳐 재공모 실시 여부를 정하기로 함
- ③ 폐기물 반입량 감축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월 1회 4자간 국장급 논의를 하기로 함
- ④ 소각시설을 조속히 확충하여 수도권매립지에 종량제 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하고, 건설폐기물 반입 제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
- ⑤ 환경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, 인천광역시장, 경기도지사의 양자 또는 다자 회동을 추진하기로 함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김세현 사무관(☎ 044-201-740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3

연도별·지역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

별첨 파일 참조

환경부 보도 설명자료	제공일	2021년 5월 17일
	소관부서	자원순환정책관실 폐자원에너지과
	담당자	김정환 과장/김세현 사무관 (044-201-7400/7407)

제목 :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연기를 검토한 바 없음

[국민일보 2021.5.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- 2021.5.17일 국민일보 <‘2026년 수도권폐기물 직매립 금지’ 시행 연기 검토>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-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당초 예고했던 2026년보다 늦게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

- 환경부는 지난 2월 5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2026년부터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,
- 현재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 수렴 과정 중으로 직매립 금지 시기는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7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임